

「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1월 6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, 김민성 의원 (2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낙관, 김원섭, 김춘남,
소진혁, 이명희, 이상호, 이지연,
장미경, 정지원 의원 (10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월 6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월 14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,

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강화하여
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신청 및 처리(안 제3조)
- 지원범위(안 제4조)
-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
 - 2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
 - 3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
- 예 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재 환

○ 본 조례안은

-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로 인한 불합리한 제약을 완화하고,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- 특정 의원에 대한 특혜가 아닌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원으로서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됨.
- 아울러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그 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